

# 2022학년도 성인지 교육 계획안

<교원양성지원센터, 2022. 4. 28.>

## □ 추진배경

- 「교원자격검정령」 일부개정령 공포·시행으로 교원양성과정 이수 중 성인지 교육 2회 이상(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의 경우)이 필수화됨
  - ※ 「교원자격검정령」 일부개정령(대통령령 제31434호, 공포 및 시행 '21.2.9.)
-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성인지 교육과정을 개설함으로써 무시험 검정 교원자격증 취득 과정을 원활히 운영하고자 함
- 이에 따라 예비교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키고, 성희롱·성폭력이 갖는 교육적·사회적 문제점을 이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적 실천 방안 모색

## □ 주요내용

- 기간: 2022. 5. ~ 2023. 12.
- 대상: 교원양성과정 이수 학생 전원
- 이수기준
  - 교원양성과정 기간 동안 2회 이상 이수\*
  - \* 2021. 2. 9. 기준 교원양성과정 2학기 이하 남은 사람은 제외
  - 1년에 1회 이하로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    - ※ 필요한 경우 교원양성지원센터는 1년에 성인지 교육 2회 이수를 허가할 수 있음
  - 4차시 이상으로 구성된 교육을 이수하여야 1회로 인정한다.
- 절차: (교원양성지원센터) 성인지 교육 계획 및 안내
  - ⇒ (인권센터) 성인지 교육 개설 및 교육 이수 명단 제출
  - ⇒ (교원양성지원센터) 성인지 교육 이수 확정

## □ 교육일정

연번	일시	교육 방법	장소
1	2022. 5. 31.(화) 15:00~17:00	오프라인(인권센터)	S0동 국제교류관 409호
2	2022. 10. 31.(화) 18:30~20:30	오프라인(인권센터)	추후 안내

※ 문의: 교원양성지원센터(821-1068), 인권센터(828-8625)

## □ 향후계획

- 교직이수예정자의 교원양성과정 무시험검정 교원 자격증 취득 요건 충족